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6. 20.(금) 10:00

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동 청소년 부모빛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726호
- 나. 제 출 자 : 고성미의원
- 다. 제출일자 : 2025. 5. 29.
- 라. 회부일자 : 2025. 5. 29.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아동 및 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의 상속으로 경제적 위협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8조).
- 라. 정보제공 및 홍보, 비밀준수 등(안 제9조 및 안 제10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제3조, 제4조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조
 - 「민법」 제1005조, 제1019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5. 검토의견

가. 제정 이유

본 조례안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원발의 되었으며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1)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

※ 주요 법률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의 범위

법률	아동·청소년 정의
청소년기본법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보호법	만 19세 미만
아동복지법	18세 미만

2) 구청장 책무(안 제3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수집인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

3)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8조).

- 법률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지원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
-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다. 검토의견

-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민법 제997조),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또한 상속됨.

※ 상속 관련 법률 행위

법률행위(민법)	법률효과	절차
단순승인 (제1019조 제1항)	피상속인의 자산과 부채 등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상속의 기본형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
상속포기 (제1019조 제1항)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켜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 (위 기간내 상속포기 하지 아니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
한정승인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 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 (위 기간내 한정승인 하지 아니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
특별한정승인 ¹⁾ (제1019조 제3항)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 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내

-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해야 함에도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함.

1)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함(「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함(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 따라서 상속 채무로 인한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며,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본 조례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하여 대상자 발굴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18호, 2024. 2. 6.,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2016. 3. 22.>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20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민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1. 13.>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

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 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